

第107回(定例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4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0年12月16日(土) 11時03分

議事日程(第4次本會議)

1. 서울特別市自治區의財源調定에 관한條例改正建議要求(案)
2. 서울特別市鐘路區區民會館設置·管理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鐘路區洞事務所名稱과所在地및管轄區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鐘路區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鐘路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鐘路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7. 서울特別市鐘路區食品振興基金條例(案)
8. 서울特別市鐘路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9. 2001年度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產管理計劃變更計劃(案)
10. 2001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
11. 2000年度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

附議된案件

1. 서울特別市自治區의財源調定에 관한條例改正建議要求(案)(鐘路區廳長 提出)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區民會館設置·管理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洞事務所名稱과所在地및管轄區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提出) 2面
4. 서울特別市鐘路區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5. 서울特別市鐘路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6. 서울特別市鐘路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7. 서울特別市鐘路區食品振興基金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8. 서울特別市鐘路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9. 2001年度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產管理計劃變更計劃(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10. 2001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11. 2000年度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11時03分 開議)

○議長 金以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받고 안건별로 심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自治區의財源調定에 관한條例改正建議要求(案)(鐘路區廳長 提出)
2. 서울特別市鐘路區區民會館設置·管理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3. 서울特別市鐘路區洞事務所名稱과所在地및管轄區域에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提出)
4. 서울特別市鐘路區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5. 서울特別市鐘路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6. 서울特別市鐘路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提出)
7. 서울特別市鐘路區食品振興基金條例(案)
(鐘路區廳長 提出)
8. 서울特別市鐘路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9. 2001年度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鐘路區廳長 提出)
10. 2001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鐘路區廳長 提出)
11. 2000年度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
(鐘路區廳長 提出)

(11時05分)

○議長 金以煥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自治區의財源調定에關한條例改正建議要求(案),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鐘路區區民會館設置·管理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鐘路區洞事務所名稱과所在地및管轄區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4항 서울特別市鐘路區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5항 서울特別市鐘路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6항 서울特別市鐘路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7항 서울特別市鐘路區食品振興基金條例(案), 의사일정 제8항 서울特別市鐘路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9항 2001年度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 의사일정 제10항 2001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 의사일정 제11항 2000年度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행정위원회 李東奎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行政委員長 李東奎 市民行政委員會 委員長 李東奎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金以煥 議長님을 비롯한 金正大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盧張鐸 副區廳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심사보고에 앞서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심의, 구정질문 등 장장 16일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청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개정 건의 요구(안) 외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개정 건의 요구(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건의요구(안)은 '88년 5월 이후 자치구간 재원조정을 위해 특별·광역시는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91년 서울시에 서 조례 개정이후 변화된 재정여건의 미반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제도 운영상 전반적인 개선·보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서 조정교부금의 산출기초인 측정단위별 수치지 산정기준을 현행 19개항 외에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국가 등 비과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종교 등 시설에 대한 비과세 대상건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종로구는 서울의 심장부로서 청와대, 정부 중앙청사 등 공공기관이 201개소가 있고 또한 창경궁, 경복궁, 창덕궁 등 고궁과 국보 69개소, 보물 27개소, 사적 16개소, 천연기념물 7점 등 총 284점이 있으며 조계사 본산,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기독교연합회관 등 종교시설을 포함해서 비과세 대상 면적이 전체의 66.7%에 달하고 있습니다. 각기 상이한 임지를 가진 구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측정

치 가운데 우리 구와 같이 예산수요는 많으나 비과세 대상이 많아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자치구에 대한 고려 단위가 없어 조정 조례로서의 기능유지가 미흡하므로 합리적인 기준을 두도록 하는 건의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우리 종로구에 대한 행정여건 및 특수성이 감안되어 비과세에 대한 대상건수가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측정단위별 수치산정 기준에 반영이 된다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회관설치·관리 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민회관 대관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사전검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여 구민회관 대관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코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9조제2항에서 구민회관 대관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사용료 징수를 위해 사전검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삭제하고 대신 시설사용 종료 후 입장수입 총액을 통보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는 구민회관 사용료는 세금을 공제한 총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입장료 총 수입액의 확인을 위하여 입장권에 대한 사전검인을 받도록 한 것이나 이는 다분히 행정 편의적인 규제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 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직동 관할구역인 세종로 100번지 일대가 세종로거리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불편 및 행정능률을 저해하므로 행정동 관할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 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직동 관할의 법정동인 세종로 100번지 일대 0.035㎢를 종로1·2·3·4가동으로 행정동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대상지역에는 일민재단, 한국전기통신공사, 문

화관광부, 열린마당이 소재할 뿐 거주주민이 없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고 대로를 중심으로 행정동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민원 편의 및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일부가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련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 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금지급정지 사유 중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등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지급정지 사유중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여 현실성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99년 2월 8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남녀차별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의 위촉대상 중 하나인 30세 이상 50세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에서 선출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당해통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덕담과 신임이 있는 60세이하의 민방위대에 편성된 활동적인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통장의 임무 수행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없는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둔 것은 남녀평등과 관련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삭제하

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이 '99년 8월 7일 개정되어 전자이미지판인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사무의 간소화,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이미지 판인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 판인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각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2조제3항에 신설하는 사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행정환경이 사이버공간의 온라인 전자문서기반으로 전환되어감에 따라 전자결재문서 발송시 전자이미지 판인사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도에만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을 2000년 7월 13일부터 시·군·구에도 설치토록 식품위생법 제71조가 개정됨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조례준칙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수익금 등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 7개사업으로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2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시·도에만 설치·운용하던 식품진흥기금을 구에도 설치·운용함으로써 구의

실정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종로구는 타구에 비해 업소와 과징금 징수금액이 많고 시설개선자금이 타구에 비해 많이 소요될 것이므로 시에서 보유중인 식품진흥기금 중 일정액을 자치구에 배분시에는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自治區의財源調定에관한條例改正建議要求(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區民會館設置·管理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洞事務所名稱及所在地및管轄區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食品振興基金條例(案) 審査報告書

(鐘路區廳長)

(이상 7건 附錄에 실음)

○議長 金以煥 李東奎 市民行政委員長!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財務建設委員會 金福同委員長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建設委員長 金福同 財務建設委員會委員長 金福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07회 정례회 기간 중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구청 관계관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107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0년 7월 29일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지금까지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른 사항과 현행 조례사항 중에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을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은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자가 교통관리청의 필요에 의거 그 의무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설치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에 대한 설치비용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는 사안이며 규제개혁완화차원에서의 개정사항은 일반노외주차장 이용시 주차거부조항 중 업주의 횡포적 규정인 요금미납시 주차 거부 규정을 삭제하고 또 간선도로의 하역주차구간에 하역할 수 있는 대상 차량을 화물차로 한정하였던 사항을 모든 차량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은 상위법 개정으로 시행규칙에 정하였던 사항을 조례에 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규제개혁완화차원에서의 개정안중 하역주차구간에 대한 이용차량 완화규정은 하역주차구간설치 본래 목적이 퇴색할 우려가 있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00년 11월 21일 의결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일부를 변경하는 (안)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제1별관 5층

옥상에 연면적 502.5㎡를 증축하는 내용과 창신3동 청사를 창림·창신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연대하여 신축하는 사안과 또 청운경로당을 매각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청운경로당은 자하문터널 상단부의 고지대 외각에 위치하여 접근이 불편하고, 청운아파트 철거로 이용대상 노인이 급감한 사항과 필운·신교동간 도로개설공사시 확대보상으로 대체 건물이 확보됨에 따라 현 경로당을 용도폐지 후 매각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창신3동 청사 신축은 창림·창신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연대하여 신축하는 사안으로 '98년 11월 16일 제86회 임시회에서 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던 사안이나 시효(2년) 만료로 재 승인을 구하는 사안이며 청운경로당 매각은 이용회원이 격감하여 '99년 12월 7일 용도폐지를 검토하였던 사안이나 대체시설 확보 후 처리하기로 하고 보류하였던 사안으로 대체시설이 확보되었으므로 매각계획은 타당하다고 심의되었으며 제1별관 옥상 증축에 있어서는 부실공사 및 보온·단열·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증축할 것과 특히 본 건물이 서울시와 소유권 다툼이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원만히 처리하여 소유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취득과정에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보편 타당성을 추구하고자 전 위원들이 매우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사에 임하였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2001年度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 審査報告書

(鐘路區廳長)

(이상 2건 附錄에 실음)

○議長 金以煥 金福同 財務建設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豫算特別委員會 安載弘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特別委員長 安載弘 豫算特別委員會 委員長 安載弘입니다. 존경하는 金以煥 議長님을 비롯한 金正大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鄭興鎭 區廳長님과 盧張鐸 副區廳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망의 새천년 첫해인 올해도 이제 보름 후면 조용히 그 자취를 뒤로 하고 새로운 신사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97년 말부터 겪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외환위기로 위축된 경제가 다소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돌이켜보면 올해도 우리 모두에게 힘든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신사년에는 하시는 사업 모두 소원 성취 하시기 바라면서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의 주요내용은 예산액의 변동 없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건설부담금 및 누하동 35번지에서 93번지 도로확장공사비에 책정된 예산을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명시이월대상은 시비보조 및 구비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5억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성동구 등 5개 구와 공동으로 중랑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할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시설 건설부담금 5억원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입찰방법심의, 부지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변경, 타당성조사 등이 부진하여 소요공정 등을 감안할 때 연내 집행이 어려우며 누하동 35번지에서 93번지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은 누상·옥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와 연계되는 진입도로를 확보코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2000년 10월 9일

자로 간주처리하여 공사를 위하여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법 소정절차이행을 위한 절대 공기부족으로 공사발주가 늦어져 연내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심의과정에서 본 사업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신중히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특히 음식물쓰레기의 광역자원화시설은 보다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 처리방안 등을 강구하여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의 총 규모는 1,518억 8,300만원으로 이는 2000년 당초예산 1,457억 9,600만원보다 4.2%인 60억 8,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71억 6,7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 1,114억 2,100만원보다 5.2%인 57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47억 1,6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 343억 7,500만원보다 1%인 3억 4,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이 다소 증가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 고통을 함께 나누는 초 긴축재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 편성부분에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조급이라도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재원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확보를 위하여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수정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그리고 경상적경비 중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 일부를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을 보고 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

서는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별 감액 또는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와 종로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의 동의를 받아 본 위원회(안)으로 확정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시설비,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등 총 10억 3,565만 3,000원을 삭감하여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정부재특자금 원금상환에 3억원,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도로유지보수비에 2억원, 하수 시설보수비에 1억원 등 총 10억 3,56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최대한 존중하면서 위원회별 감액 또는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과 신중한 재검토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44억 9,900만원으로 의료 및 구호비에 44억 9,700만원과 기타 경비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진료비에 지원될 예산으로 수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302억 1,700만원으로 이자수입, 이월금 잠수입으로 계상된 예산이며 전년대비 2.7%인 3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차량의 증가와 더불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출예산의 과목별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긴축예산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이 시점에서 정치 1번지이며 서울의 중심지역인 우리 구에서 솔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예산과 경상적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여 주민의 숙원사업 등에 증액한 것이니 이 점 이해하시고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2001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

歲出豫算(案) 審査報告書

2000年度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鐘路區廳長)

(이상 2건 附錄에 실음)

○議長 金以煥 安載弘 豫算特別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李東奎議員 議席에서 - 議長!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조금 이따 하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우선 다시 묻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2001년도 예산안 수정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설치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새 비목의 설치나 증액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金賢植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金以煥議長님! 金正大副議長님! 그리고 安載弘 豫算特別委員會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여러분! 이번 제107회 정례회 기간동안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어긋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여러 분야에서 구정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증액 요청하신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종로구민들에게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저희 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0년의 새 출발을 내딛 금년 한해도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해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희망찬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金賢植 行政管理局長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李東奎議員!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東奎議員 李東奎議員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한 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간에 서로가 약간의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에서 10분간 정회해 주실 것을 동의를 요구합니다.

○議長 金以煥 李東奎議員님이 잠깐 정회하자는 동의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朴鍾植議員 議席에서 - 이유가 있어야죠.)

(○李東奎議員 議席에서 -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속기록에 남길 수 없으니까)

(○朴鍾植議員 議席에서 - 그런데 결론은 다 내려진 것인데)

○議長 金以煥 그러면 이것 끝나고 의원님들끼리 하실 일이면 그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李東奎議員 議席에서 - 아니요. 정회를 해야 됩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고 말씀을 드리고)

됐습니다. 동의하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議員 있음)

(「재정합니다」 하는 議員 있음)

재정하시고 그러면 安載弘議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4分 會議中止)

(11時49分 繼續開議)

○議長 金以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건의요구(안)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통장장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의 계획을 준비하는 뜻깊은 제107회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 심사 및 구정질문 등을 위해 16일간의 오랜 회기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하게 모두 마치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19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과 봉사로 많은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희망과 설렘으로 시작한 새천년 첫해인 경진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뜻깊고 알차게 마무리해주시고 밝아오는 2001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가내에 행운이 늘 함께 하여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례회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時57分 閉會)

○出席議員 19人

- | | | | |
|-----|-----|-----|-----|
| 金以煥 | 鄭泰淳 | 李憲九 | 吳錦南 |
| 千相旭 | 玄壽漢 | 安載弘 | 丁炳煥 |
| 劉燦鍾 | 李炯述 | 洪承台 | 金福同 |
| 朴鍾植 | 吳弼根 | 洪起瑞 | 崔康洵 |
| 李東奎 | 金正大 | 宣相善 | |

○出席關係公務員

- | | |
|--------|-----|
| 行政管理局長 | 金賢植 |
| 財務局長 | 董連浩 |
| 生活福祉局長 | 李炳滿 |
| 建設交通局長 | 吳鍾錫 |
| 都市管理局長 | 河徹昇 |
| 保健所長 | 李星世 |

